

廢棄物 規制의 合理化



具 然 昌

〈慶熙大 法大學長·法博〉

오늘날의 현저한 都市化·產業化와 消費의 大量化傾向과 함께 廢棄物의 量이 急增함에 따라 그 處理는 중대한 社會的問題로 등장하게 되어 폐기물문제는 大氣污染과 水質污染에 벼금가는 「第3의 公害」 문제로서 부각되었다. 廢棄物의 處理如何에 따라 環境衛生에 영향을 줌은 물론, 環境汚染의 惡化에 직접·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適正한 處理에는 經濟的·社會的·政治的·技術的인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世界各國에서는 廢棄物의 適正處理 및 이의 實현을 위한 體制의 定立를 강구함에 부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찌기 1961년에 汚物을 위생적으로 處理하여 生活環境을 청결히 함으로써 國民保健의 향상을 기할 目的으로 汚物清掃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同法의 目的規定에서 보는 바와같이 그法的性格은 이른바 環境法의인 것이 아니고 衛生法의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環境問題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었던立法當時 이후 한동안 汚物清掃法은 우리 나라에 있어 廢棄物處理에 관한 規制立法의 根幹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그러나 汚物清掃法은 그 内容이 未備·不完全하여 그 規制의 對象이나 方法이 制限되어 있었기 때문에 70年代에 들어서면서 廉棄物處理問題가 점차 심각화하기 시작하자 汚物清掃法으로

서는 환경문제화한 폐기물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河川法, 港灣法, 公有水面管理法 등에서 일정水域에 폐기물을 投棄하는 것을 禁止·制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山河와 海洋은 온갖 종류의 廢棄物投棄場化되다시피 했었던 것이다. 더구나 工業化傾向과 함께 급증하기 시작한 產業廢棄物은 質的問題를 제기시켜 人體와 動植物에 심각한 被害를 주게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政府는 우리나라 環境對策에 一大轉換을 가져다 준 環境保全法의 제정에 즈음하여 廢棄物의 法的規制를 整備·體系化하였다.

現行法下에서는 廢棄物에 대한 法的規制는 1977년 이전에 비하여 비교적 體系化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1년 環境保全法의 改正에서 더욱 補完되었다. 現行法下에서의 廢棄物의 法的規制는 다음 몇 가지로 體系化시켜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장 傳統的이면서도 기본적인 規制手段으로서 각종 廢棄物을 公共水域이나 山林등지에의 投棄를 禁止·制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河川·海洋의 水質污染이나 土壤污染을抑制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環境保全法 第 37條를 비롯하여 河川法 제 37조, 公有水面管理法 제 9조, 港灣法 제 7조, 漁港法 제 6조, 汚物清掃法 제 10조, 水產業法 제 74조등에서 일정한 物體나 物質을 投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違反時處罰케 하고 있다.

둘째의 規制手段은 각종의 廢棄物을 일정한 方法과 基準에 따라 處理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一般廢棄物은 汚物清掃法에 의하여, 產業廢棄物은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船舶·海洋施設로부터의 기름 및 廢棄物은 海洋污染防治法에 의하여, 그리고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은 原子力法등에 의하여 각각 그 處理가 規制되고 있다.

세째로는 廢棄物 중에서도 특히 合成樹脂廢棄物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1979년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을 제정하여 이러한 廢棄物의收集·處理 및 費用負擔을 規制하고 있다.

네째로는 지금까지 放任하다시피 하였던 廢棄物의 回收措置에 관한 規制를 1981년 環境保全法의 改正에서 새로이立法化하였다. 즉, 同法 제 49조의 4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製品·容器등이 폐기물로 될 경우에 그回收 및 處理가 용이하게 되도록 조치할義務가 부과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現行法體制下에서 廢棄物에 관한 規制는 그런대로 體系化되어 있어 廢棄物問題는 물론 폐기물에 의한 環境污染을抑制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워낙 廢棄物規制行政의 確立이 뒤늦은 데에다 行政經驗의 누적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廢棄物規制立法이나 行政에 있어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廢棄物規制의合理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시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廢棄物規制의 法的體制는 대체로 정비되었으나 구체적으로 廢棄物의 종류에 일맞게 그規制가 適正性을 기하고 있는지는 자못 의문시된다. 예컨대, 產業廢棄物은一律적으로 環境保全法에서 정하고 있는 方法과 基準에 의하여 處理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產業廢棄物이라 함은 事業活動에서 발생하는 物質 또는 物體로서 保社部令으로 정하는 廢棄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一般廢棄物에 속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再生, 資源化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環境保全法에서는一律적으로 일정한 處理가 강제되고 있다.

원래 環境規制는 이를 할 것이냐 혹은 아니할 것이냐의 一刀兩斷的인 擇一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어떤」것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規制할 것인가의 調整의 문제인 것이다. 廢棄物規制도 역시一般的인 環境規制에 관한 이調整의原則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나친 廢棄物處理는 企業側으로 보나 國民經濟的側面으로 보아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엄격한 處理規制의 對象이 되고 있는 產業廢棄物에 관하여는 그處理의 適正을 기할 수 있는 융통성이 부여되는立法的措置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廢棄物의 再生 및 資源化가 오히려 立法이 정비되지 못하였던 때보다 더욱 脱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2년 美國의 스미소니언研究所가 AID用役으로 한국 서울의 環境問題를 調査한 후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汚染된 都市로서 진단하면서도 廢棄物의 收集이나 再生·資源化에 관하여는 그 效率性에 있어 격찬을 했었던 것이 기억된다. 오늘날 과지나 빈병·빈깡통등이 어느 정도 再生되고 있는지를 보면 쉽게 문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再生·資源化가 가능한 廢棄物의 收集·管理 및 資源化의 經濟性이 그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이 문제를 法的으로나 經濟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體制가 確立되지 않는다면 國民經濟性側面에 있어서도 큰 損失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量的으로 급증하게 되는 多種의 廢棄物處理에 더욱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측된다. 現行의 廢棄物의 收集·回收·再生·資源化가 實現될 수 있는 立法的 補完이 시급하다고 본다.

세째, 廢棄物規制 및 그 處理問題는 오늘날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業務의 量이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現行의 水質保全局內의 廢棄物處理課의 체제로서는 문제가 있다. 環境廳이 신설되기 이전에 保健社會部의 環境衛生局內에는 環境廳의 주된部署가 된 環境企劃課·大氣保全課·水質保全課이외에 清掃1課와 清掃2課가 있었다. 環境廳의 신설과 함께 環境廳은 汚物清掃法의 施行을 담당하는 主管部署가 되었다. 그런데 종래의 3個課는 모두 局으로 승격되어 計劃調整局·大氣保全局·水質保全局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廢棄物行政을 담당하는 部署로서는 단지 1個課를 설치한 데 그친 것은 不合理하기 짝이 없다. 물론 環境廳의 신설당시에는 廢棄物問題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득이 가진 한다.

그러나 오늘날 廢棄物處理行政의 복잡성이라든가 그 業務의 量的·質的인 張창에 비추어 본다든지, 또한 지금까지 등한시되었던 廢棄物處理行政體制의 確立을 위하여는 마땅히 環境廳내에 廢棄物處理局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環境行政分野에 있어서는 그 行政의 적극화·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機構의擴充이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 건전휴가보내기 ====

- 민폐 끼치지 않기
- 가족과 함께 보내기
- 피서지 행락질서 지키기
- 고향 찾기